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의안 번호	1478
----------	------

제안연월일 : 2002. 2.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26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위원회(2002. 1.23)에서 정당
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나.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2. 2.25)에서
2001년 11월 30일 박상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중개정법률
안, 2001년 12월 7일 이해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중개정법
률안, 2001년 12월 17일 오세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중개정
법률안 및 2002년 2월 1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함.

다. 2002년 2월25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원
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기로 가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하여 당내 경선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또한 정당의 정책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 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나아가 정당의 조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함(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일간신문지 창당집회개최공고를 생략토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다. 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라.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지구당에는 2인 이내로 하고, 구·시·군연락소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마. 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하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

자중 여성을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등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당원 등의 매수를 금지함(안 제31조의2).

사. 정당의 중앙당은 정책활동계획 및 그 집행내용을 포함한 활동개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37조제1항,신설).

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자. 당원 등 매수금지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45조의2).

政黨法中改正法律案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區·市·郡, 邑·面·洞에” 를 “區·市·郡에” 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中央黨과 地區黨의” 를 “中央黨의” 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入黨願書 및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新聞公告에 관한 證憑資料”를 “入黨願書” 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除名 등”을 “除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黨員資格의 停止處分節次 등”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政黨의 黨員은 당해 政黨의 他人의 黨費를 負擔할 수 없으며, 他人의 黨費를 負擔한 者와 他人으로 하여금 자신의 黨費를 負擔하게 한 者는 黨費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年間 당해 政黨의 黨員資格이 停止된다.

제30조의2제1항중 “5人 이내로 한다.”를 “5인 이내, 地區黨에는 2인 이내로 하되, 하나의 國會議員選舉區가 2 이상의 區·市·郡으로 된 경우에

는 區·市·郡의 黨連絡所에 각 1인을 추가하여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比例代表全國選舉區國會議員選舉候補者와 比例代表
選舉區市·道議會議員選舉候補者중” 을 “比例代表全國選舉區國會議
員選舉候補者중” 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政黨은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會議員選舉候補者중 100分の 50
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되,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會議員選舉候補
者名簿順位에 따라 매 2人마다 女性 1人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⑥政黨은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市·道議會議員選舉候補者중 100
分の 30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政黨에 대하여는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17條(補助金の 計上)의 規
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補助金외에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17條의2
(公職候補者 女性推薦補助金)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補助金を
추가로 支給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黨員등 買收禁止)①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 및 代表者(이
하 이 條에서 候補者등”이라 한다)의 推薦 및 選出에 있어 누구든
지 候補者등으로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權을 가진 黨員 또는 그 配偶者나 直系 尊·卑屬에게 명목여하

를 불문하고 金錢 기타 財産상의 利益 또는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候補者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候補者등(이하 이 항에서 候補者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利益提供行爲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候補者등은 그 利益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정기보고)①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 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지구당은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取消된 政黨의 名稱과 같은 名稱은 登錄取消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國會議員 任期滿了에 의한 國會議員選舉日까지 政黨의 名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당원등 매수금지위반죄)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政黨의 黨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登錄된 政黨은 第22條의2第3項에 規定된 사항을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黨憲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第3條(補助金の 計上에 관한 經過措置) 第31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2003年度 豫算부터 計上한다.

第4條(邑·面·洞 黨連絡所의 登錄抹消) 이 法 施行전에 登錄된 政黨의 邑·面·洞 黨連絡所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에 그 登錄을 抹消한다.

第13條의2(同前-黨支部등의 경우)

①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責任者, 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다만, 邑·面·洞의 連絡所의 경우에는 責任者의 住所·姓名에 한한다.

② (생략)

第22條의2(黨費) ① (생략)

<신설>

②黨費納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黨員에 대한 權利行使의 제한, 除名 등 필요한 사항은 黨憲으로 정한다.

第30條의2(政黨의 有給事務職員數 제한)

①政黨에 들 수 있는 有給事務職員은 中央黨에는 150人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 資格 등을 갖춘 政策開發研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黨支部에는 5人 이내로 한다.

② (생략)

第13條의2(同前-黨支部등의 경우)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단서 삭제>

② (생략)

第22條의2(黨費) ① (현행과 같음)

②政黨의 黨員은 당해 政黨의 他人의 黨費를 負擔할 수 없으며, 他人의 黨費를 負擔한 者와 他人으로 하여금 자신의 黨費를 負擔하게 한 者는 黨費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年間 당해 政黨의 黨員 資格이 停止된다.

③ -----
-----, 除名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黨員資格의 停止處分節次 등 -----.

第30條의2(政黨의 有給事務職員數 제한)

①-----

-----5人 이내, 地區黨에는 2人 이내로 하되, 하나의 國會議員選舉區가 2이상의 區·市·郡으로 된 경우에는 區·市·郡의 黨連絡所에 각 1人을 추가하여 들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31條(公職選舉候補者의 추천)

①~③ (생략)

④政黨은 比例代表全國選舉區國會議員
選舉候補者와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
會議員選舉候補者중 100分の 30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第31條(公職選舉候補者의 추천)

①~③ (현행과 같음)

④-----比例代表全國選舉區國會議員選
舉候補者중 -----
-----.

⑤政黨은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會議員
選舉候補者중 100分の 50이상을 女性으
로 추천하되,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會
議員選舉候補者名簿順位에 따라 매 2人
마다 女性 1人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⑥政黨은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市·道
議會議員選舉候補者중 100分の 30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政黨에 대하여는 政治資金
에關한法律 第17條(補助金の計上)의 規
定에 의하여支給하는 補助金외에 政治
資金에關한法律 第17條의2(公職候補者
女性推薦補助金)의 規定에 의하여支給
하는 補助金を 추가로支給할 수 있다.

<신 설>

第31條의2(黨員등 買收禁止) ①政黨의 公職選舉候補者 및 代表者(이하 이 條에서 候補者등”이라 한다)의 推薦 및 選出에 있어 누구든지 候補者등으로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舉權을 가진 黨員 또는 그 配偶者나 直系 尊·卑屬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金錢 기타 財産상의 利益 또는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行위를 할 수 없다. 다만,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儀禮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物品 및 飲食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候補者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등(이하 이 項에서 候補者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利益提供行爲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候補者등은 그 利益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에 규정된 行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7條(定期報告) 中央黨과 地區黨은 每
年 12月 31日 現在로 그 黨員數 및 活
動概況을 翌年 2月 15日까지 當該選舉
管理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그러
나, 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要件에 欠缺
이 생긴 때에는 欠缺이 생긴 날로부터
15日안에 當該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신 설>

第43條(類似名稱등 사용금지)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37조(정기보고)①중앙당과 지구당은 매
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
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
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
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지구당은 제25조 내지 제27
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
이 생긴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43條(類似名稱등 사용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
消된 政黨의 名稱과 같은 名稱은 登錄取
消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國會議員
任期滿了에 의한 國會議員選舉日까지 政
黨의 名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5조의2(당원등 매수금지위반죄) 제31조

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